

Policy and Law Report _Vol.46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7. 27. ~ 7. 31.) -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는 “세법 개정 주요 내용”, “주요 정부부처의 대 국회 업무보고 자료” 및 2020. 7. 30. “제21대 국회 제380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중 기업이나 협회와 관련된 법안을 정리하여 소개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1]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2020. 7. 26. 디지털금융 산업·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지급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신설, ② 서비스 간 융·복합이 활성화되는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과도하게 세분화된 업종을 기능별(결제·송금·대행)로 통합·단순화(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③ 영업규모에 따라 자본금·등록 등 특례를 부여하되, 영업 확장시 자본금 등을 상향 적용(Small License) 등이 있음

[\[참고자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참고자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금융위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0. 7. 2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주요 내용으로 ①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신용정보법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결합, ② 복수의 신용조회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최대 10인의 전문인력만을 요구하여 핀테크 기업의 부담 완화, ③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등이 있음

[\[참고자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금융위·금감원1]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0. 7. 28.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의 후속조치로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하여 전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 ②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 ③ 보험상품심사기준(시행세칙 제5-19조)을 개정하여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 추가 등이 있음

[\[참고자료\] 보험업감독규정 입법예고](#) 

[\[참고자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금융위·금감원2]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 추진

2020. 7. 28. 사모펀드 제도개선 및 전면점검을 위한 행정지도를 추진함. 주요 내용으로 ① 판매사·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 견제, 펀드 운용과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등 사항을 행정지도로 시행, ② 판매사 운용사 수탁기관 사무관리회사에 대해 자체점검의 체계, 범위, 점검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지도, ③ 금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8.12.(잠정)부터 시행 예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 추진 

[참고자료] 사모펀드 행정지도(안) 

[기재부]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발표

2020. 7. 30. 혁신도시의 내실화를 위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 ① 이전 공공기관이 선정된 협업과제에 자체자원 및 인력 등을 과감히 투입하고, 지자체 및 지역대학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추진, ② 10대 협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해저광물자원법(산업부) 등 관련 법령 개정, 용도 제한 해제(복지부) 등 토지 규제 해소, 위탁개발 대상사업 승인(기재부) 등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③ 도시계획 변경(부산시) 등 토지 규제 해소, 입주승인(전북도) 등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금융타운 조성(전북도)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 있음

[참고자료]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발표 

[참고자료]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국토부1] 국가하천 관리 디지털화 추진 발표

2020. 7. 28.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국가하천 관리 디지털화를 추진할 예정임. 주요 내용으로 ① 148개 지자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규모 예산을 단기간에 투입하여 추진, ②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을 '20년부터 '22년까지 국가하천의 모든 배수시설(3,580개소)에 대해 구축, ③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21년부터 '22년까지 국가하천 전 구간(3,600km)에 구축 등이 있음

[참고자료] 한국판 뉴딜로 국가하천 관리 디지털화 추진 

[국토부2] 디지털 트윈 산업계 간담회 개최

2020. 7. 31. 디지털 트윈 주요사업 등을 발표하기 위해 산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함. 주요 내용으로 ① 3차원 지도는 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 모형(3D 지형지도)과 고해상도 영상지도 (25cm→12cm) 구축, ② 차량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 지도는 전국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약 14,000km 구축, ③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는 3D 공간데이터와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 등이 있음

[참고자료]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디지털 트윈 정부와 산업계 협력](#)



[공정위1]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0. 7. 28.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이러한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 금지, ② 대리점법 금지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제도 도입, ③ 공급업자(단체), 대리점(단체)이 표준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있음

[참고자료]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2]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안 확정

2020. 7. 29.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함. 주요 내용으로 ① 경미한 위반행위로서 경고 조치할 수 있는 피심인의 연간매출액(또는 예산액) 상한을 1.5배 상향 조정(사건절차규칙), ② 시장에 영향이 미미하여 불공정행위 심사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연간매출액 기준을 현행 2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미만으로 상향(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③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기준(거래횟수 및 거래규모)을 완화하여 신고면제 대상을 확대(통신판매업 신고면제고시) 등이 있음

[참고자료]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2020. 7. 28.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주요 내용으로 ① 개정 법에서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적인 부착대상 범위 규정, ②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른 허가 절차,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허가기준 등 마련, ③ 개정 법에서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 정기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에 검사 주기·기준, 부적합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등 세부내용 규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폐수처리업 안전관리 강화 등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방통위·행안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 7. 2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주요 내용으로 ①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개인정보 이용·제공 가능, ②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규정, ③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정 중 위임근거가 사라진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 삭제 및 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지정, 앱 접근권한 등의 업무와 관련한 시행령의 조문 체계 정비 등이 있음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위·기재부·중기부·금융위]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발표

2020. 7. 30. 대기업을 투자를 활성화하여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 금지, ②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의 출자자 현황, 투자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 거래관계 등 공정위에의 정기 보고 의무, ③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요건 충족시 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등이 있음

[참고자료]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발표




[참고자료]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금융위·기재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

2020. 7. 30. 산업별 혁신 대표기업을 선정하여 종합금융을 적극 지원할 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디지털·그린 뉴딜 부문, 신산업(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 등 다양한 산업부문을 포함하여 각 산업부문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자체심사를 통해 혁신성 높은 기업 선정, ② 성장금융 등의 정책펀드 등을 활용하여 혁신기업에 대해 투자 지원(3년간 15조원 자원 활용), ③ 산은과 국내 대형

VC 간 협의체(“MEGA7”) 등을 통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가능성 높은 혁신기업에의 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이 있음

[참고자료]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발표 



[참고자료]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 

*** 세법 개정 주요 내용(기업 관련)**

주요 내용	개정내용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단순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9개)와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개편 • 세제지원 대상자산 대폭 확대: 열거된 특정시설(Positive 방식) →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Negative 방식: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으로 확대 • 투자증가 인센티브: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대 1%, 중견 3%, 중소 10%)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신설) *$[\text{당해 연도 투자액} - \text{직전 3년 평균 투자액}] \times 3\%$(모든 기업) •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우대(대 3%, 중견 5%, 중소 12%) 및 공제요건 대폭 완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턴방식 제한 완화: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지원(‘20. 3. 17. 조특법 既개정) • 해외생산량 감축요건 폐지: 국내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여야 하는 요건 폐지 • 해외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도록 설계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부담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을 위한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확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관세법」상 벌칙사유(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나 부당행위(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자료를 미제출(거짓제출)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만 발급 제한 유지

조미용 주류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 제외 시 제조 판매 관련 「주세법」상 규제도 적용 배제
----------------------------	---

*** 2020. 7. 28. 주요 정부부처의 업무보고 자료**

정부부처	업무보고 자료	정부부처	업무보고 자료
고용부		중기부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안)

행정예고(관보19802호)

한국과 EU는 지난 '16년부터 GDPR 적정성 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 EU집행위원회는 GDPR 제45조에 근거하여 한국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적절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고 결정할 예정임. 이에 적정성 결정에 기반하여 한국으로 이전된 EU 주민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과 적용을 명확히 하고 양국가간 제도적 차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법 제3조, 제15조, 제18조 관련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칭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동 범위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기나 명예훼손 등의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기술유출·유용에 한해서는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소송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하여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신설하며, 기술유출·유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 32조, 제35조 및 제35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처리 현황은 2018년 기준 1,455건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6개 협의회 전체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인 3,631건의 40.1%에 달하고 있고, 두 번째로 처리 건수가 많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1,024건)의 1.4배, 세 번째로 처리 건수가 많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848건)의 1.7배에 달하고 있음. 이에 효율적인 하도급분야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수의 하도급분쟁조정협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기업결합당사회사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고, 타방의 경우 300억 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외국회사의 경우 위 기준에 더하여 국내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 규모기준에 미달하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4차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등에 대한 거액 인수가 이루어지더라도 현행법으로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잠재적 경쟁사업자 인수를 통하여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고 경쟁을 사전에 차단할 우려가 있음. 이에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현행 신고대상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주식인수가액 등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4차산업혁명 분야 등에서의 혁신 경쟁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현행법상 상호 중첩되는 “산업합리화”와 “산업구조의 조정” 공동행위 인가요건은 “산업합리화 및 구조의 조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과 “거래조건의 합리화” 인가 요건은 “중소기업경쟁력 향상 및 거래조건 합리화”로 각각 통합하고, “연구·기술개발”을 삭제하여 인가요건을 간소화·명확화함으로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1호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1인)]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을 하여 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다른 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리점의 사업자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계약 해지, 공급 중단 등과 같은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안 제12조제1호 신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의 불이익 등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유사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 39조, 제40조 및 제4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피심인의 변호인 조력권과 조사공무원의 진술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조사공무원의 진술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로 명확히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 및 제50조의3 신설, 안 제52조의2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반투자자 및 유한책임사원의 요건 강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운용에 대한 신탁업자의 위법여부 확인,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주기의 단축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7조제6항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등 15인)]

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21.3.25. 시행예정) 제8조는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감독 및 검사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지방세 포탈 관련 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당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0조 및 제15조)

[공유경제기본법안(태영호의원 등 10인)]

공유경제에 관한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활용 극대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21인)]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투자를 금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의원 등 14인)]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0인)]

앱마켓사업자에게 불법정보가 포함된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고,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개발자로 하여금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앱마켓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앱마켓 이용자와 모바일 콘텐츠개발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22조의 9 및 제10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의원 등 10인)]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이에 이 법에도 사업주가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단서 신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 등 10인)]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도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3. 제380회 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법안

2020. 7. 30. 제380회 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는 총 4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법률안 중 주요 법안을 소개 드립니다.

법안명	(대표)제안자	주요내용	파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 원장	<p>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안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p> <p>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p> <p>다. 차임 등의 증액 상한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으로 하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p> <p>라.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p> <p>마.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도록 함(안 제30조).</p>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p>가. 협의를 통한 표준 서식 마련(안 제10조의6 및 제19조)</p> <p>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던 표준권리금계약서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던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앞으로는 각각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p> <p>나.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안 제14조의2 신설)</p> <p>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액,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함.</p>	

		<p>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확대(안 제20조제 1항)</p> <p>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함.</p>	
--	--	--	--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Chong-Ah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